

4. 骨材採取促進法(案) 立法豫告

建設部公告 第95號

1.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

가. 제정 취지

주택건설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으로 인한 골재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골재채취에 관한 법률의 다원화로 허가절차가 복잡하고 골재자원의 조사와 골재수급계획을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없어 골재의 안정적 공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등록기준 및 감독기능의 미비로 골재채취에 따른 공해나 재해의 방지와 골재채취현장에 대한 적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점을 감안, 골재채취에 관한 법률을 일원화하여 골재수급의 안정을 기하고 골재채취에 따른 자연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자 골재채취촉진법(안)을 제정추진코자 함.

나. 주요 내용

- (1) 골재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합리적인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골재자원의 기초조사를 행하고 건설부장관은 실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.
- (2) 골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건설부장관은 5년마다 골재수급기본계획과 연도별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.
- (3) 골재의 수급불균형으로 국민경제운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수급안정을 위한 골재의 집중개발이나 비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.
- (4) 골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건설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한 법인이나 자본금의 1/2 이상을 출자한 법인 등 일정한 법인에 대하여 골재의 집중개발이나 비축을 명할 수 있도록 함.

- (5) 골재개발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기술정보제공 및 기술지도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나 용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골재채취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에 대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.
- (6) 골재채취의 지원 및 수급안정에 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골재수급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.
- (7) 골재채취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골재채취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등록기준에 의하여 시·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함.
- (8) 골재채취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도·감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.
- (9) 건설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골재채취업자로부터 업무, 재산, 골재채취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.
- (10) 골재채취업자의 품위보전이나 골재채취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골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.
- (11) 골재를 채취하고자 할 때에는 채취계획서를 작성하여 골재채취지역을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인가를 받도

록 함.

- (12) 자연환경 및 문화재보전과 국가의 중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는 골재채취계획의 인가를 할 수 없도록 함.
- (13) 골재채취지역이 광업권설정지역과 중복된 지역의 골재채취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설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.
- (14) 골재채취에 따른 인·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골재채취계획 인가가 있는 경우 다른 법률의 인·허가사항을 받은 것으로 보되 인가전에 시장·군수·구청장 등의 인가권자가 다른 법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.
- (15) 골재채취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·군수가 골재채취계획 인가를 받은 자에게 시설물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.
- (16) 골재채취에 따른 자연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자에게 원상복구등 적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적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골재채취계획의 인가시에 골재채취업자로 하여금 적지관리

예치금을 납부토록 함.

- (17) 골재채취로 인하여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거나 재해발생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채취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.
- (18) 건설부장관은 골재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골재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질의 골재가 상당량 부존되어 있는 지역을 골재수급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재채취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동지구안에서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정한 법인 등이 토지수용법 제 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용 골재를 채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의 수용 및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.

2. 의견 제출

이 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1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부장관 (참조: 건설경제과장, 주소: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, 전화: 500-2903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- (2)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 등